

새로운 사회계약과 디지털 권리장전: 정치·사회적 맥락과 제도화를 중심으로*

조계원**

요약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의 기존 규범과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할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청하고 있다. 디지털 헌정주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신질서를 구축하려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기본권 보호와 권력 균형을 위한 규범들을 확립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이다.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은 이러한 이념에 기초해 헌정주의화를 실천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시민단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도하여 비공식적이고 구속력 없는 선언의 형태로 디지털 사회의 변화된 특성에 맞는 규범적 원칙을 제시하는 형태를 띠었지만, 최근에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원칙을 담은 공식 헌장·선언문이나 법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의 최근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일정한 규범적 방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결합되어야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술 및 산업과 규범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디지털 전환, 사회계약,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 디지털 헌정주의, 규범과 실천의 균형

The New Social Contract and the Digital Bill of Rights : Focusing on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and Institutionalization*

Jo, Gye-Won**

Abstract

Digital transformation calls for a new social contract that must transform the existing norms and paradigms of our society. Digital constitutionalism is a way of building new order through a new social contract and is an ideology that aims to establish and ensure a normative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balance of power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e Internet/Digital Bill of Rights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constitutionalization based on this ideology. Initially, it took the form of an informal, non-binding declaration led b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or various stakeholders, setting forth normative principles adapted to the changing nature of digital society. More recently, they have taken the form of formal charters, declarations, or laws containing principles at the national or regional level. The "Digital Bill of Rights" prop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can be seen as an example of this trend, but it does not fully reflect the recent trend of Internet/Digital Bills of Rights in terms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legitimacy. Even if the government provides a certain normative direction, it needs to be combined with a concrete action plan in each area to create a balance of norms with digital technologies and industries instead of simply being a "declaration".

Keywords : digital transformation, social contract, Internet/digital bill of rights, digital constitutionalism, balance of norms and practices

Received Feb 2, 2024; Revised Mar 4, 2024; Accepted Mar 5, 2024

* This paper is a revised version of Chapter 8 of the the final report of the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KISDI)'s 2023 policy research project, "Changing Global Norms and Expanding Social Solidarity in the Age of Virtual Convergence". The author thanks the reviewers for their helpful comments.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Political Research, Korea University (gyewonjo@gmail.com, <https://orcid.org/0009-0006-7161-508X>)

I. 서론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은 개인의 복지, 지속 가능성 및 성장의 기회를 제 공함과 동시에 공공 정책을 통해 대응이 필요한 새로운 위험을 낳고 있다. 경제 시스템의 진화, 단순노동 대체,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객관성 증진, 생산성과 품질 향상, 운영 효율성 증대와 같은 긍정적 영향과 함께 개인 정보 오남용과 프라이버시 침해, 보안 문제, 인공지능(AI) 윤리 문제, 경제적 격차 확대, 사회갈등 증대와 같은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 디지털 전환의 양면성에 주목하고 그 역기능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수립 및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Koo, 2022).

그러나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디지털 전환이 초래하는 문제는 단순히 ICT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에 그치지 않는다. 디지털 경제의 심화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가, 정치적 대표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의 증대, 상호 연결된 세계의 취약성으로 인한 불안감의 고조는 기존 '사회계약'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징후로 볼 수 있을 만큼 현재의 규범적 틀과 정치 및 사회 제도의 회복력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포퓰리즘의 부상이라는 전지구적 현상의 이면에도 이러한 사회계약의 균열이 자리 잡고 있다(Muñiz, 2019). 폭력이나 격변, 불안정과 같은 실존적 위협이 증대할수록 정체성은 더욱 경직되고 고립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포퓰리스트들은 부당한 차별이나 피해를 겪고 있는 '진짜 국민' 집단에게 호소함으로써 사회변동이 초래하는 통제력의 상실에 대항하고자 하기 때문이다(Gardels & Berggruen, 2020).

사회계약은 통치가 어떤 의미에서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의 일종의 원초적인 계약에 근거한다는 관념에 기초한다. 그 핵심은 사회계약을 통해 자연상태에서 정치사회로 전환될 때 개인의 일정한 '권리'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의 내용은 사회의 발전에 따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발전권과 자결권, 평화권과 환경권에 이르

기까지 확장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들을 헌법과 실정법의 체계 내에서 기본권의 형태로 보장하고자 하는 흐름이 존재해 왔으며, 국제인권규약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국제 인권법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Cho, 2016). 이런 의미에서 헌법은 사회계약 개념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과 사회계약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 가장 추상적인 의미에서 사회계약은 시민과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사이의 암묵적 합의다. 헌법 조항의 내용을 넘어서 존엄한 삶의 조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시민의 중첩적 합의가 사회를 뒷받침하는 규범적 토대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연대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사회가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기존 규범이 비효율적인 것이 되거나, 기존 규범이 새로운 현상을 포괄하지 못해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사회계약의 균열이 발생하면, 규범에서 벗어난 상호작용이 늘어나 사회적 불안정과 불안이 커진다. 이는 다시 기존 규범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헌정적 순간(Constitutional Moment)을 만들어낸다(Muñiz, 2019).

저성장의 고착화, 저출산 및 노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위기 등과 함께 디지털 전환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는 거시적인 사회구조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는 광범위하다.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의 수단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공공 부문을 비롯해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Yang, 2022). 그러나 기술변화 속도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기술변화의 편향성에 의해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Yeo, 2022). 그러므로 디지털 혁신에 의해 급속하게 삶의 환경이 변화되는 조건에서 그 혜택이 사회구성원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생태계에 기초하여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규범적 토대를 마

련해야 한다(Lee, et al., 2021). 디지털 기본권/인권의 확립, 디지털 격차의 해소와 포용, 글로벌 연대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사회계약이 요구되는 것이다.

디지털 혁명은 현대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비롯한 법률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의 법률체계는 ‘아날로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가져오는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이에 대한 반작용 중 하나로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일련의 흐름이 등장했다. 이는 디지털 사회의 변화된 조건에 맞게 법질서를 조정하기 위한 규범을 담은 선언문을 말한다. 이러한 선언은 주로 전통적인 정치과정 외부에서 등장했으며,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시민단체, 기업,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대체로 법적 구속력은 지니지 않지만 기술 발전과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고, 디지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선언문은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 헌법적 언어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본권을 보호하고 권력 균형(Balance of Power)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을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의 핵심적인 사고를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사회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헌정주의화하려는 정치·사회적 과정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Celeste, 2023).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기의 새로운 사회계약 내용을 살펴보고(II장), 디지털 헌정주의 관점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이념과 제도화에 대해 고찰한다(III장).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국 정부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검토한 후 이것이 선언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IV장).

II.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사회계약

디지털 전환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AI,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사회에 결합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식별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되는 절차나 규칙의 집합을 말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인터넷 검색, 소셜 미디어 피드, 추천 시스템, 기업의 채용, 금융 거래, 교통, 범죄 예측 등 사회적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알고리즘의 영향력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확장됨에 따라 알고리즘 지배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와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책임성 부재의 문제, 알고리즘의 구성 요소나 알고리즘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편향성으로 인한 차별과 편견의 문제, 대량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Jung, 2020; S. Oh, 2021; Hong, 2023). 알고리즘 사회의 부상이 우리 사회의 기존 규범과 패러다임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기존 사회계약이 새롭게 검토되고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디지털 지배(Digital Domination)의 통제와 시민적 자유의 증진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에서 시민이 통제되지 않는 권력에 노출되는 ‘디지털 지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화주의 정치이론에서 지배는 크게 개인이나 집단이 국가와 맺는 공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직적 지배와 개인이나 집단 간의 사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수평적 지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임페리움(Imperium), 후자를 도미니움(Dominium)이라고 부른다(Pettit, 1997). 디지털 지배도 국가에 의한 것과 사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뉘볼 수 있다. 전자는 국가기관이 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거나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개입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의사소통 채널을 왜곡하는 것을 가리킨다(Megiddo, 2020). 후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과 영향력 증대로 인한 문제와 알고리즘이 미시적 수준에서 확대되어 사용되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 등이 있다(Taylor, 2021; Mass, 2022).

빅데이터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국가가 시민의 생활을 감시하고, 개인에 대한 권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감시사회가 등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¹⁾하므로 이와 같은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것은 중요하다(Celeste, 2023). 하지만 디지털 자본주의의 심화 속에서 이론적으로 더 도전적인 문제는 후자이다. 알고리즘 사회로 변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기업 또는 빅테크 기업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권력이 부상하고, 권력의 작동 방식도 크게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고리즘 사회에서는 공적 권위와 사적 질서가 교차되는 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민간 기업이 디지털 공간을 차지하면서 준공공적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은 국가 중심으로 작동하는 기존의 공적 개입에서 대체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책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De Gregorio, 2022).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시민의 자유가 증진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지배자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온라인 게이트키퍼’ 역할을 담당하면서, 디지털 기술 도구에 대한 개인의 접근과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지닌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법적 의무는 국가에만 해당되며, 사기업은 이러한 기준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다(Celeste, 2023). 알고리즘 사회에서 주된 위협은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데,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전통적으로 공권력에 부여된 기능을 행사하고 있는 사적 행위자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De Gregorio, 2022). 이처럼 통제 또는 견제되지 않는 권력에 노출될 때 지배로 인한 자유의 상실이 발생한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채팅봇 서비스 ‘이루다’가 혐

오표현과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켜 중단된 것처럼(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챗봇 ‘테이’도 혐오표현으로 중단된 바 있다), 무분별한 빅데이터 수집과 알고리즘에 내재된 편향된 학습데이터 등도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지배 문제를 낳고 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개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편향성을 지닌 알고리즘 모형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이로 인해 알고리즘 모형이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의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닫혀 있는 상황이다(O’Neil, 2017). 알고리즘 사회에서 시민들은 디지털 환경을 규율하는 규칙의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막혀 있으며, 페이스북(Facebook) 감독위원회와 같은 자율규제 장치도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효과적인 참여나 대표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De Gregorio, 2022). 이처럼 새로운 권력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지배 현상에 주목하면서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통제를 벗어난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2. 플랫폼 자본주의의 부상과 공정하고 포용적인 경제

온라인 플랫폼은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주문경제(On-Demand Economy), 주목경제(Attention Economy), 직경제(Gig Economy) 등으로 불리며 다양한 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혁신적 시장의 모델로 급속히 성장했다.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의 거래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물리적, 가상적, 제도적 환경”으로 이해되며, 두 종류 이상의 이용자 집단이 플랫폼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간접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가치가 창출되는 양면시장 현상에 기초한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중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간접네트워크 효과는 시장집중을 초래하는 요소를 갖고 있다(Park, 2018). 특히 플랫폼의 다양

1) 2013년 6월 미국 국가안보국(NSA) 계약직 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과 영국의 국가정보기관들이 비밀정보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 등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사찰한 사실을 폭로한 사건이 대표적이다(Jang, 2020).

한 역할로 인해 운영자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로 인해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현행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체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법적 보호에서 벗어난 플랫폼 노동을 양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닌다(Maeng, et al., 2020). 그래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Shim, et al., 2021).

플랫폼 노동이란 플랫폼을 기반으로 또는 매개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하는 노동 혹은 서비스로서의 새로운 고용형태를 말한다. 여러 계약형태가 가능하지만 '수요자-플랫폼-공급자'의 3자 관계로 구성되는데, 공급자를 어느 범주(노동자 또는 1인 사업자)로 분류할 것인지, 플랫폼 운영자를 사용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달리 계약이 초단기적이고 사용자가 다수로 구성될 수 있어서 노동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문턱도 높다. 이러한 불안정한 법적 조건에서 낮은 소득과 장시간 노동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Han & Sin, 2020).

기존의 생산관계는 고용을 전제로 하여 기업과 노동, 국가/사회가 임금과 노동력, 조세와 사회보험 등을 교환하는 사회계약의 형태를 지닌다. 고용의 부재를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고용관계가 아닌 방식으로 노무를 획득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정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회에 그 부담을 전가한다. 그 결과 사회적 계약을 불균형적으로 침식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이와 같이 기존의 고용관계나 노동 방식에서 벗어난 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포괄적 형태로 사회계약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Nahm, 2022).

또한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거나 사업 영역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막아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개입이나 규제 방안을 이해관계자와 국가가 협력하여 마련해가는 것이 필

요하다(Shim, et al., 2022).

3. 공정한 데이터 생태계 구축과 데이터 공화국

데이터의 생성, 수집, 활용 능력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해지면서 데이터를 새로운 재화로 바라보는 시각이 증가했다. 데이터 재화는 특정 목적을 위한 분석이 가능할 정도의 양이 모여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집합재적 특성과, 단순히 병합될 때보다 관계성을 유지한 채 연결될 때 가치가 증폭되는 특징을 지닌다. 비식별 처리를 통해 익명가공정보가 되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 가능해지면서 공공재적 성격을 갖게 된다(Kim, 2020). 기존에는 개인의 정보 보호를 중시했다면, 현재는 가치창출 및 자산적 가치 활용의 대상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Jung, et al., 2020). 2020년 1월 국회에서 통과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 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개인 동의 없이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데이터를 둘러싼 이러한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침해, 가명정보 데이터의 재식별화 가능성, 데이터 생산자의 저작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Kim & Hong, 2020).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생체인식정보와 같은 민감정보 수집 증가, 데이터의 대규모화, 개인정보 처리 복잡화 등에 따른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현재의 법제는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가명정보 및 양립가능성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보 주체의 통제권이 약화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Kyoung, 2023). 그 결과 프라이버시 통제에 대한 불확실성 및 무기력을 초래하고 있다(Jung & Lee, 2022).

데이터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이해관계자의 데이터 가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기업과 정부가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데이터를 둘러싼 새로운 규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

를 둘러싼 규제 지형은 복잡해지고 있다(Jung, et al., 2020).

핵심은 산업 및 공공 측면에서의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공정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Kim, 2023). 시민들이 더 많은 정보 공유에 동의할 수 있으려면, 데이터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접근 및 이용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자신의 데이터가 폭넓은 사회적 가치를 위해 활용된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사회계약은 공정한 데이터 생태계로서의 데이터 공화국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행위자의 데이터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하고, 데이터 권력 분배를 둘러싼 새로운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고안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 행위자와 관행을 연결하고, 시민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강화하며, 데이터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의 기술적·법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Calzati & Van Loenen, 2023).

4. 글로벌 디지털 협력과 지속가능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네트워크의 글로벌화로 국가들이 더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국제 협력을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6월 UN 디지털 협력에 관한 고위급 패널은 “디지털 상호의존의 시대”라는 보고서에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으로 ①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 및 사회 구축, ②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 ③ 인권과 인간 자율성 보호, ④ 디지털 신뢰, 안보 및 안정성 촉진, ⑤ 글로벌 디지털 협력 증진을 제안했으며, 2020년 6월에는 “디지털 협력을 위한 로드맵” 보고서를 발표하여 디지털 전환이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연결성’, ‘디지털 포용성’,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인

권’, ‘디지털 신뢰성과 안보’라는 의제를 제시한 바 있다(Song, 2021).²⁾ 이러한 측면에서 글로벌 디지털 협력은 디지털 상호의존의 시대에 새로운 사회계약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위험이 개별 국가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전지구적 차원에서 공유된 규범과 규칙이 요구되는 보편적 문제임을 뜻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있는 만큼,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글로벌 디지털 표준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표준의 제정과 이행은 여전히 분절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유럽과 중국은 개인 정보 보호와 데이터 주권을 강조하는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지해 왔다(K. Lee, 2020). 디지털 무역 협정을 통한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허용 및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요구 금지에 대한 규정은 디지털 자유주의에 기초한 미국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이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외국시장 진출이 확대되었고, 그 영향력도 커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의 경우도 빅테크 기업에 의한 시장 독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가 데이터 현지화와 관련해 공공정책 목적상 필요한 규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뜻한다(Lee, 2023). 전지구적으로 준공공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책임성을 결여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부상함에 따라 이러한 권력을 제한 혹은 견제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국가의 보호의무, 기업의 존중책임, 다중이해 당사자간 협력 등—의 필요성에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De Gregorio, 2022). 또한 사이버 기술·정보 탈취에 대한 대응, ICT 기술 및 보안표준 관련 조치 등과 같은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2) 2023년 7월 14일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한국 정부 주도로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가 채택되었다. 신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고 디지털 문해력이 증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인공지능을 개발 및 활용하는 데 있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3).

도 글로벌 디지털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Yoo, 2020).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 전환은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디지털 기술은 에너지·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존 산업 부분의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오히려 인공지능 학습 실행이나 비트코인 채굴 등의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켜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0년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ICT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3.2% 정도에 불과하지만,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2050년에는 35.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탄소중립 추진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Rhee, 2023). 각 산업별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분야의 전기화에 따라 ICT 장치 및 기기의 증가와 이동통신·무선 네트워크의 확산, 데이터센터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ICT산업의 에너지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재는 ICT산업 각 분야별 에너지 사용량 및 탄소배출량 정보 등이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Lee, 2022).

디지털 전환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려면 디지털 기술이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목표를 세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Huh, 2021). 또한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여 일반 시민들이 이를 활용할 때 보다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Hwang & Lee, 2023).

III. 디지털 헌정주의: 디지털 권리장전의 이념과 제도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디지털 전환 시기에는 기존의 규범적 질서를 바탕으로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질서

를 재구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 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장에서는 디지털 권리장전이 등장하는 맥락으로서 디지털 헌정주의에 주목한다.

디지털 헌정주의는 정치적 권리, 거버넌스 규범, 인터넷에서의 권력 행사에 대한 제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일련의 이니셔티브로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Redeker, et al., 2018).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헌정주의는 국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지니며 법의 지배(Rule of Law), 권력의 분산 또는 균형, 소수자 보호를 위한 반대수결주의를 핵심 요소로 한다(Pettit, 1997). 기존 헌정주의는 국가 권력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고, 통치자가 피통치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자의적 권력 행사를 제한하려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디지털 헌정주의는 디지털 환경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를 다차원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가뿐만 아니라 준공공적 권력을 행사하는 국내외의 디지털 기술 기업도 개인의 권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행위자이며, AI와 같은 비인간(Non-Human) 행위자 또한 불평등한 권력 분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Sattarov, 2023). 이들은 기존의 헌정적 균형 혹은 생태계에 충격을 안겨주는데, 디지털 헌정주의는 이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헌법을 제정 혹은 개정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근대 헌정주의는 정치공동체 내의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관계를 '정당성'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갱신되는 정치적 과정으로 바라본다. 그 제도적 산물인 헌법은 통치자에게는 통치의 형식과 내용의 근거와 한계를 부여하고, 피통치자에게는 자신의 법적·정치적 지위를 확인하거나 전유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Yi, 2021). 헌법은 국가 권력을 통제, 제한, 구속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하지만 조정과 집합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권능을 부여하는 역할도 수행하는 것이다(Redeker, et al., 2018). 마찬가지로 디지털 헌정주의도 단순히 '디지털 권리 헌장'이 아니라 디지털을 통해

〈표 1〉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사례
 (Table 1) Key Examples of Internet/Digital Bills of Rights

Year	Title of Document	Scope	Origin	Type	URL
1999	People's Communication Charter	Global	Civil Society	Advocacy statement	http://www.pccharter.net/charteren.html
2003	Declaration of Principles: Building the Information Society	Global	Multistakeholder	Advocacy statement	https://www.itu.int/net/wsis/docs/geneva/official/dop.html
2006	Internet Rights Charter	Global	Civil Society	Advocacy statement	https://www.apc.org/node/5677
2008	Seoul Declaration to the OECD 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	Global	Civil Society	Advocacy statement	https://legalinstruments.oecd.org/public/doc/113/113.en.pdf
2008	Global Network Initiative (GNI) Principles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Privacy	Global	Civil Society	Advocacy statement	https://respect.international/gni-principles-on-freedom-of-expression-and-privacy/
2009	Principles for the Governance and Use of the Internet (Brazil)	Global	Multistakeholder	Advocacy statement	https://www.cgi.br/resolucoes-2009-003-en/
2010	Geneva Declaration on Internet Freedom	Global	Civil Society	Advocacy statement	https://www.citizenpowerforchina.org/geneva-declaration-of-internet-freedom/
2010	Charter for Innovation, Creativity, and Access to Knowledge	Global	Civil Society	Advocacy statement	https://fcforum.net/en/charter/
2010	Charter of Human Rights and Principles for the Internet	Global	Multistakeholder	Official position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Issues/Opinion/Communications/InternetPrinciplesAndRightsCoalition.pdf
2011	Declaration on Internet governance principles (EU)	Regional	Government	Official position	https://search.coe.int/cm/Pages/result_details.aspx?ObjectID=09000016805cc2f6
2011	Communiqué on the Principles for Internet Policy making	Global	Government	Official position	https://www.oecd.org/sti/ieconomy/49258588.pdf
2011	Joint Declaration Concerning the Internet	Global	Government	Official position	https://www.oas.org/en/iachr/expression/showarticle.asp?artID=848&lID=1
2011	Internet Rights are Human Rights	Global	Civil Society	Advocacy statement	https://www.apc.org/en/pubs/briefs/internet-rights-are-human-rights-claims-apc-human-
2012	Declaration of Internet Freedom	Global	Civil Society	Advocacy statement	https://declarationofinternetfreedom.org/
2013	Global Government Surveillance Reform	Global	Private	Advocacy statement	https://www.reformgovernmentsurveillance.com/
2013	(Mashable) Crowdsourced Digital Bill of Rights	Global	Civil Society	Advocacy statement	https://mashable.com/archive/digital-bill-of-rights-crowdsourced
2013	Marco Civil da Internet (Brazil)	Global	Government	Law	https://publicknowledge.org/policy/marco-civil-english-version/
2013	Magna Carta for Internet Freedom (Philippines)	National	Government	Proposed legislation	https://legacy.senate.gov.ph/lisdata/1586313101!.pdf
2014	International Principles on the Application of Human Rights to Communications Surveillance	Global	Civil Society	Advocacy statement	https://www.eff.org/files/necessaryandproportionatefinal.pdf

〈표 1〉 계속

Year	Title of Document	Scope	Origin	Type	URL
2014	Multistakeholder Statement	Global	Multistakeholder	Advocacy statement	https://netmundial.br/2014/wp-content/uploads/2014/04/NETmundial-Multistakeholder-Document.pdf
2014	Green Party's Internet Rights and Freedom Bill (New Zealand)	National	Government	Proposed legislation	https://nzoss.nz/content/the-green-partys-internet-rights-and-freedoms-bill
2014	Declaration of Internet Rights (Italy)	National	Government	Resolution	https://www.camera.it/application/xmanager/projects/leg17/commissione_internet/testo_definitivo_inglese.pdf
2014	African Declaration on Internet Rights and Freedom (African Union)	Regional	Civil Society	Advocacy statement	https://africaninternetrights.org/en
2014	The Charter of Digital Rights (EU)	Regional	Civil Society	Advocacy statement	https://edri.org/wp-content/uploads/2014/06/EDRi_DigitalRightsCharter_web.pdf
2015	Magna Carta for the Digital Age	Global	Civil Society	Advocacy statement	https://www.bl.uk/my-digital-rights/magna-carta-2015
2016	Charter of Digital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EU)	Regional	Civil Society	Advocacy statement	https://digitalcharta.eu/wp-content/uploads/2016/12/Digital-Charta-EN.pdf
2016	loi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	National	Government	Law	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16380
2017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Digital Rights	Global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	Advocacy statement	https://www.article19.org/resources/internetofrights-creating-the-universal-declaration-of-digital-rights/
2018	Digital Charter (United Kingdom)	National	Government	Official positio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igital-charter/digital-charter
2019	Digital Charter (Canada)	National	Government	Official position	https://ised-isde.canada.ca/site/innovation-better-canada/en/canadas-digital-charter-trust-digital-world
2020	Liberal Principles of Digitalization and Human Rights	Glob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political parties	Advocacy statement	https://liberal-international.org/digitalprinciples/
2021	Carta de Derechos Digitales (Spain)	National	Government	Official position	https://derechodigital.pre.red.es/
2021	Carta Portuguesa de Direitos Humanos na Era Digital (Portugal)	National	Government	Law	https://www.parlamento.pt/Legislacao/Paginas/Educacao_Carta-Portuguesa-de-Direitos-Humanos-na-Era-Digital.aspx
2022	Universal Digital Rights	Global	Multistakeholder	Advocacy statement	https://audri.org/digital-principles/
2022	Declaration on Digital Rights and Principles (EU)	Regional	Government	Official position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european-declaration-digital-rights-and-principles
2022	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 (USA)	National	Government	Government framework	https://www.whitehouse.gov/ostp/ai-bill-of-rights/
2023	Florida Digital Bill of Rights (USA)	State	State Government	Law	https://www.flsenate.gov/Session/Bill/2023/262/BillText/er/HTML

source: Redeker, et al. (2018), with post-2016 cases added by the author.

확장된 세계에서 기본권을 보호하고 권력 균형을 만들어내기 위한 규범들을 확립하려는 이념으로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범위도 헌법에 디지털 기본권을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사법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에서부터, 현재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같은 사법(私法)을 제정해 규율하는 방법, 민간의 자율 규제를 이용하는 방법, 국가의 개입 없이 사회의 하위 부문이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등을 통해 상향식으로 규범을 만들어내는 방법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Celeste, 2019).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헌정주의 이념에 기초해 헌정주의화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의 권리를 천명한 일종의 ‘헌법’을 만들자는 것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이 발표되었다. 디지털 사회의 변화된 특성에 비추어 인권의 핵심 가치를 재해석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규범적 원칙을 제시하는 형태를 띤다(Celeste, 2023). 즉 법적 권리의 틀을 벗어나 도덕적 혹은 정치적 측면에서 권리를 새롭게 상상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의 시작은 적어도 19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주요 사례를 정리해보면 앞의 <표 1>과 같다. 국제기구, 각국 정부, 기술 기업, (초국적) 시민사회단체, 국제인터넷 거버넌스 등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그 형태도 성명서, 입법안/법, 공식 선언문 등으로 다양하다.

초기의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은 주로 전지구적 차원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며, 새로운 지배 행위자의 출현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규범적 해답을 만들어내려는 이니셔티브를 담고 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도하여 비공식적이고 구속력 없는 선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규범적 원칙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권리장전’이라는 용어도 상징적인 측면이 강했다(Celeste, 2023).

이러한 초기의 이니셔티브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어난 인권의 지구적 헌정화를 배경으로 하는데, 디지털 측면에서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국제인권레짐을 디지털 공간이라는 새로운 맥락에 맞게 일련의 권리와 원칙으로 구체화하고자 한 것이다(Yilma, 2022). 이를 대표하는 것이 2006년에 만들어진 유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에서 2010년에 발표된 「인터넷을 위한 인권 및 원칙 헌장」(Charter of Human Rights and Principles for the Internet)이다.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의 국제인권장전을 구성하는 기타 규약을 바탕으로 인권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2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IRP(Internet Rights & Principles) 헌장 또는 IRPC(Internet Rights & Principles Coalition) 헌장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민간 및 국가가 주도한 다양한 수준의 유사한 이니셔티브에 영감을 주었으며 현재에도 IRPC를 통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은 개인이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되었음을 인정하는 규범, 기본권의 잠재적 침해 제한하는 규범, 권력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규범 등으로 폭넓게 나타난다(Celeste, 2019). 2015년까지 자료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내용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였으며, 인터넷에 대한 접근권, 인터넷 거버넌스 과정과 네트워크의 투명성 및 개방성도 중요하게 다뤄졌다(Redeker, et al., 2018).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2013년 스노든의 폭로는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는데,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이니셔티브에 그치지 않고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Yilma, 2022). 그 결과 이후에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원칙을 담은 공식 헌장·선언문이나 법의 형태로 구체화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통일되고 일관된 이니셔티브가 아니었던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이 국제적·지역적·국가적 수준에서 합의를 형성해 법과 정책 등으로 실행되어 실제로 현실을 규율하는 원리로 작동하는 제

〈표 2〉 인터넷/디지털 권리 장전의 주요 내용(1999~2015년)
 〈Table 2〉 Highlights of the Internet/Digital Bill of Rights (1999–2015)

Topics	Highlights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	-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 non-discrimination	- freedom of information - freedom of safety and dignity - cultural and linguistic diversity	- freedom of belief - protection of children
privacy and surveillance	- right to privacy - right to anonymity - right to use a password	- data protection - control and self-determination	- right to be forgotten - protection from surveillance
accessibility and education	- right to access - user awareness and education	- speed and cost - media and digital literacy	- access and competency in the workplace
governance and civic engagement	- multistakeholder and participatory governance	- transparency and openness - open data	- right to participate - digital inclusion
openness and network reliability	- net neutrality - interoperability - device rights	- network security -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 network stability and reliability - open standards
limiting state power	- democracy and rule of law	- right to due process	- right to legal remedy
economic rights and responsibilities	- innovation and competition - intermediary accountability	- economic development - corporate responsibility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consumer protection

source: Y. Oh(2021).

도화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국가 혹은 초국적 기구가 중심이 되어 아래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숙의를 거쳐 공식화되고 있다.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의 실질적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획득해야 권리 보장, 권력 제한, 거버넌스 규범 설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Yilma, 2022).

2016년 통과된 프랑스의 「디지털공화국법」(Loi n° 2016-1321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은 2013년 5월 국가디지털위원회(CNNuM)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토론과정을 거쳐 “디지털 사회의 시민”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본격화되었고,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의 사전의견조사를 거친 후 2015년 11월 국가원 검토를 거쳐 공식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입법화되었다(J. Lee, 2020). 스페인은 경제디지털전환부 디지털화·인공지능사무국의 주도하에 1년간 전문가 자문위

원회를 운영하고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2021년 7월 정부가 「디지털 권리 헌장」(Carta de Derechos Digitales)을 채택·발표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개인 정보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2018년)을 제정하고, 국가 디지털 전략인 “España Digital 2025”(2020년 7월)를 발표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거쳤다. 포르투갈은 2020년 후반에 국회에 제출되었던 법안을 통합·수정해 「디지털 시대의 포르투갈 인권 헌장」(Carta Portuguesa de Direitos Humanos na Era Digital)을 2021년 4월 법률로 승인했지만, 제 6조(허위정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의 내용이 충분한 정치·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아 2022년 7월에 개정되었다(Hwang & Lee, 2023).

EU는 2021년 3월 디지털 전환의 4대 핵심 방향성(역량 강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기업의 디지털 전환,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과 목표를 제시한 “디지털 나침반”(Digital Compass)을 발표하면

서 디지털 권리와 원칙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후 디지털 권리와 선언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디지털 원칙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와 유료바로미터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분야별 의견을 균형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그룹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22년 1월 「디지털 10년을 위한 유럽 디지털 권리와 원칙 선언문」(European Declaration on Digital Rights and Principles for the Digital Decade) 초안을 발표하고, 12월 최종 채택했다. 이 선언문은 디지털 권리를 가장 포괄적으로 담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① 인간 중심의 디지털 전환, ② 연대와 포용, ③ 선택의 자유, ④ 디지털 공공공간 참여, ⑤ 안전, 보안 및 권능 강화, ⑥ 지속가능성의 6개의 장과 24개의 선언으로 구성되어 있다(Hwang & Lee, 2023).

EU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는 초기부터 기본권 보호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졌던 것은 아니며, 지난 20년간 디지털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자유로운 디지털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디지털 자유주의에서 디지털 헌정주의로 입장을 전환했다. 특히 빅테크 기업에 의한 EU 회원국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된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2018년 페이스북-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정보 유출 사건이 대표적이다(Y. Oh, 2021).

최근에는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AI 윤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안정성, 법적 책임, 인간 고유성 담보 등 AI로 인한 윤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규범 논의가 2016년경부터 진행되어 왔다(So, et al., 2022). 이는 규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 EU는 2023년 6월 14일 최초로 유럽의회에서 인공지능법안을 통과시켰다. AI의 인간존엄성 침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수용해, 인간성 보호에 집중하면서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4월에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원안과 비교해 보면 대규모 언어학습 모델에 기초한 생성

형 인공지능 공급자를 규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이 추가되었다(Chae, 2023).

IV. 한국 정부의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평가와 규범의 실질화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제사회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규범과 원칙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쟁점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질서 기본방향을 담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디지털 권리장전」(23. 9)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은 대통령의 뉴욕구상(22. 9), 하버드대 연설(23. 4), 파리 이니셔티브(23. 6)를 통해 제시된 정책 기초를 토대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정립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기본원칙으로 ①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②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③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④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⑤ 인류 후생의 증진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제별 책무(국가·기업·시민)를 세부 원칙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3).

정부의 「디지털 권리장전」은 실질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 먼저, 실질적 정당성 측면에서 볼 때 「디지털 권리장전」은 기존 사회계약의 균열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인권레짐이 디지털 환경에서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유와, 이러한 공백이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디지털 권리장전」에 제시된 주요 권리인 ‘디지털 접근권’, ‘디지털 표현의 자유’, ‘디지털 다양성’, ‘개인의 정보 접근·통제’, ‘디지털 대체수단 요구’,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등은 이미 우

리나라의 헌법 및 법률 체계 내에서 논의되어 온 것들이고, 국가가 이를 다시 선언하여 정책적 지향점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만 제한적인 의미를 지닌다(Shim, 2023). 이러한 경우 시민,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렵다(Yilma, 2022).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 제시된 해외의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은 대체로 기존의 법 및 정책과의 관계 속에서 이를 어떻게 이행 혹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방안과 결부되어 있다.

다음으로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얼마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기획되고 추진된 「디지털 권리장전」은 이러한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온라인/디지털 권리장전은 정부,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반영하는 다중이해관계자 접근 방식의 결과물이다.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정책과 제도들을 이에 따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디지털 전환 및 심화가 초래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 논의에 앞서 「디지털 권리장전」이 제정되었음을 뜻한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디지털 공론장'(http://beingdigital.kr/front/main.do)을 통한 일반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이는 실제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다중이해관계자 접근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Shim, 2023). 캐나다의 경우 「디지털 헌장」(Digital Charter, 2019)을 제정하기에 앞서 디지털 전환이 일과 프라이버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2018년 6월 '국가 디지털 및 데이터 협의'(National Digital and Data Consultations)를 출범시켜 이후 4개월 동안 캐나다

전역에서 총 30회의 토론을 진행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³⁾ 최근에 만들어진 EU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도 이와 같이 아래로부터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이해관계의 조정 과정을 거쳤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가 주도의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윤리 기준이나 원칙을 마련하는 것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기준이나 원칙이 현실 속에서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가 일정한 규범적 방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향과 결합되어야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술 및 산업과 규범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Yoo, et al., 2021).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디지털 권리장전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야 한다. 앞에서 말했지만,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의 출현은 '아날로그' 시대에 뿌리내린 기존의 법률체계와 규범이 디지털이 중심이 된 시대에 한계를 지닌다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한다. 그렇다면 디지털 전환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현상이 어떤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을 지니는지, 개인의 권리 측면에서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지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이 향후 헌법 개정 등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내용을 예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⁴⁾

둘째, 자율주행차 및 AI의료서비스 도입, 데이터 저작권 분쟁 해소, 딥페이크/가짜뉴스 대응 등 주요 분야에서의 정책 현황 및 쟁점을 검토하여 구체적 정책과의

3) <https://ised-isde.canada.ca/site/innovation-better-canada/en/canadas-digital-charter/canadas-digital-and-data-strategy> (검색일: 2024.01.26.)

4) 문재인 정부가 2018년 3월에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는 알 권리, 자기정보통제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의무 등의 내용이 정보기본권으로 포함되었다(Sung, 2018).

연계를 통해 현실과 규범 사이에 지나친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질서의 수립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기존의’ 질서가 자리 잡게 된 한국적 맥락을 간과할 수 있다.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규범적 이상은 실행력을 갖기 어렵다. 현행 법·제도 등이 글로벌 규범에 미치지 못하거나 충돌하는 지점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질서와 새로운 디지털 질서가 일정하게 공존하면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부 영역별로 지켜야 하는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디지털 권리장전」의 큰 방향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분석해 2020년 12월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그리고 지향하는 최고 가치로 ‘인간성’(Humanity)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3대 기본원칙(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을 제시하였다(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0).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지니며, 현재의 AI 개발 등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그 특징상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면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각 영역에서 세부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실행원칙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

셋째, 「디지털 권리장전」의 규범과 원칙이 거버넌스 및 규제 방식과 일정하게 정합성을 지녀야 한다. 과거의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사회의 규범과 원칙에 대한 호소 측면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디지털 규제 차원을 포괄하면서 제도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권리장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전환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규제의 방향성과 강도에 따른 정책 수단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 속에서 자율규제와 강한 법적 규제 사이에서 어떤

방향성을 취할 것인지 검토되어야 하고, 이러한 방향성에 부합하게 디지털 규범과 원칙의 세부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간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표명한 EU의 경우, 이러한 원칙은 보다 강한 규제적 입장과 일정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디지털 전환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 사회의 기존 규범과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할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청하고 있다. 첫째,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에서 시민이 통제되지 않는 권력에 노출되는 디지털 지배 현상을 초래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둘째, 플랫폼 자본주의의 부상과 함께 기존의 고용관계나 노동 방식에서 벗어난 일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 셋째, 데이터의 생성, 수집, 활용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산업이 확대되면서 기업과 정부가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보 주체인 시민의 통제권이 약화되고 있다. 넷째,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위협이 개별 국가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전지구적 차원에서 공유된 규범과 규칙이 요구됨에 따라 글로벌 디지털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디지털 기술이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헌정주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신질서를 구축하려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기본권 보호와 권력 균형을 위한 규범들을 확립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이다.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헌정주의 이념에 기초해 헌정주의화를 실천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수많은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이 발표되었다. 초기에는 시민단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도하여 비공식적이고 구속력 없는 선언의 형태로 디지털 사회의 변화된 특성에 맞는 규범적 원칙을 제시하는 형태를 띠었지만, 최근에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원칙을 담은 공식 헌장·

선언문이나 법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제정한 「디지털 권리장전」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의 최근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규범적 방향에 맞게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뒷받침될 때 선언적 수준을 넘어 디지털 기술 및 산업과 규범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Calzati, S. & Van Loenen, B. (2023). "A Fourth Way to the Digital Transformation: The Data Republic as a Fair Data Ecosystem." *Data & Policy*, 5, e21.
- Celeste, E. (2019). "Digital Constitutionalism: A New Systematic Theoris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Law, Computers & Technology*, 33(1), 76-99.
- Celeste, E. (2023). *Digital Constitutionalism: The Role of Internet Bills of Right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hae, E. (2023). "EU Artificial Intelligence Legislation Progress and Implications." *NIA Issue Report*, 2023-03, 1-20.
- {채은선 (2023). EU 인공지능법 입법 추진 현황과 시사점.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이슈리포트>, 2023-03, 1-20.}
- Cho, H. (2016). *Human Rights Horizons: A Sketch for a New Human Rights Theory*. Seoul: Humanitas.
- {조효제 (2016). <인권의 지평: 새로운 인권 이론을 위한 밑그림>. 서울: 후마니타스.}
- De Gregorio, G. (2022). *Digital Constitutionalism in Europe: Reframing Rights and Powers in the Algorithmic Socie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rdels, N. & Berggruen, N. (2019). *Renovating Democracy: Governing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Digital Capitalism*.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n, I. & Sin, D. (2020). "The Issues and Assignments of Future Legislative Policy on the Platform Labor." *Labor Law Forum*, 29, 241-268.
- {한인상·신동윤 (2020). 플랫폼 노동의 쟁점과 향후 입법·정책적 과제. <노동법포럼>, 29호, 241-268.}
- Hong, S. (2023). "Study on the U.S. '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of 2022'."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34(1), 73-107.
- {홍석한 (2023). 미국 '2022 알고리즘 책임법안'에 대한 고찰. <미국헌법연구>, 34권 1호, 73-107.}
- Huh, T. (2021). "Digital and Green Coexist: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Monthly Software Oriented Society*, 86, 22-31.
- {허태욱 (2021). 디지털과 그린의 공존: 지속가능발전을 향하여. <월간SW중심사회>, 86호, 22-31.}
- Hwang, S. & Lee, S. (2023). "Declarations and Charters for Digital Rights: The EU, Spain, Portugal Case." *GDX Report*, 2023-01, 1-31.
- {황선영·이상은 (2023). 디지털 권리 보장을 위한 선언문 및 현장: EU·스페인·포르투갈 사례. <GDX 보고서>, 2023-01, 1-31.}
- Jang, J. (2020). "Rise of Platform Capitalism and its Problems." *Sungshin Humanities Research*, 42, 161-193.
- {장진호 (2020). 플랫폼 자본주의의 부상과 문제들. <인문과학연구>, 42집, 161-193.}
- Jung, H. & Lee, J. (2022). "A Study on Privacy Attitude and Protection Intent of MyData Users: The Effect of Privacy Cynicism." *Informatization Policy*, 29(2), 37-65.
- {정해진·이진혁 (2022).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태도와 보호의도에 관한 연구: 프라이버시 냉소주의

- 의 영향. <정보화정책>, 29권 2호, 37-65.}
- Jung, I., Lee, K. & Mok, E. (2020). "Analyzing and Responding to Stakeholder-based Regulatory Issues in the Data Industry." *STEPI Insight*, 248, 1-34.
- {정일영·이광호·목은지 (2020). 데이터 산업의 이해관계자 기반 규제 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STEPI Insight>, 248호, 1-23.}
- Jung, W. (2020). "Discrimination and Bias of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 Beings, Environment and Their Future*, 25, 55-73.
- {정원섭 (2020).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공정성. <인간·환경·미래>, 25호, 55-73.}
- Kim, D. & Hong, C. (2020). "Legal Research on the Protection of My Data after the Data 3 Act." *Wonkwang Law Review*, 36(2), 63-91.
- {김동근·홍춘의 (2020). 데이터 3법 이후 마이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원광법학>, 36권 2호, 63-91.}
- Kim, E. (2023).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the Promotion of Opening and Utilization of Open Government Data: Focusing on Cases of Refusal to Provide." *Informatization Policy*, 30(2), 46-67.
- {김은선 (2022).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30권 2호, 46-67.}
- Kim, J. (2020). "Issues for Invigorating the Data Economy." *Monthly Software Oriented Society*, 77, 10-21.
- {김준연 (2020).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슈와 쟁점. <월간SW중심사회>, 77호, 10-21.}
- Koo, B. (2022). "A Study on Risk Issues and Response Strategies Related to Digital Transformation: Focusing on Negative Eff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KISTEP Issue Paper*, 325, 1-23.
- {구본진 (2022).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협이슈 및 대응 전략: 인공지능 역기능을 중심으로. <KISTEP 이슈페이퍼>, 제325호, 1-23.}
- Kyoung, J. (2023). "A Study on International Trends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Yonsei Law Journal*, 41, 539-568.
- {경제옹 (2023).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국제적 동향 검토. <연세법학>, 41호, 539-568.}
- Lee, H. (2023). *Digital Trade Norms and Our Digital Economy Diplomacy Strategy from an Economic Security Perspective*. Seoul: Th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 {이효영 (2023). <경제안보의 관점에서의 디지털무역 규범과 우리의 디지털경제외교 전략>.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Lee, H., Lee, H., Moon, A., Kim, S., Koo, K., Kwon, S., Choi, J. & Seo, S. (2021). *Digital Transformation by 2030: Four Scenarios*. Sejong: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이현경·이효영·문아람·김사혁·구교준·권상진·최지은·서성은 (2021). <2030 디지털 대전환 미래 시나리오>.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Lee, I. (2022). "The State and Future of Digital Carbon Neutrality." *TTA Journal*, 200, 112-119.
- {이일우 (2022). 디지털 탄소중립 현황과 전망. <TTA저널>, 200호, 112-119.}
- Lee, J. (2020). "France's Digital Republic Law Evolves to Institutionalize Digital Democracy: Exploring New Political Processes that Drive Technological Progress." *Monthly Software Oriented Society*, 71, 64-71.
- {이진량 (2020). 디지털 민주주의 제도화로 진화하는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 과정의 모색. <월간SW중심사회>, 71호, 64-71.}
- Lee, K. (2020). "Global Digital Standards Cooperation and Data Governance: Human Rights and

- Development in the Digital Age.”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24(3), 177-199.
- {이가연 (2020). 글로벌 디지털 표준협력과 데이터 거버넌스: 자유주의적 인권과 개발협력 담론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4권 3호, 177-199.}
- Maeng, S., Lee, S. & Kim, S. (2020). *Analyzing the Reality of the Sharing and Platform Economy and Researching Comprehensive Solutions*. Seoul: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f Policy Planning.
- {맹수석·이상훈·김소영 (2020). <공유·플랫폼 경제시대의 실태분석 및 종합적 해결방안 연구>. 서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 Mass, J. (2022). “A Neo-Republican Critique of AI Ethics.” *Journal of Responsible Technology*, 9, 1-8.
- Megiddo, T. (2020). “Online Activism, Digital Domination, and the Rule of Trolls.”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58, 394-442.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3). “The 53rd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dopted Our Government-led Resolution on ‘New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892&page=1. (Retrieved on January 26, 2024).
- {외교부 (2023). “제53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892&page=1. (검색일: 2024.01.26.)}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0). “MSIT Releases People-centered ‘National AI Ethical Guidelines’.”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238&bbsSeqNo=94&nttSeqNo=3179742>. (Retrieved on January 26, 20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 기준」 마련.”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238&bbsSeqNo=94&nttSeqNo=3179742>. (검색일: 2024.01.26.)}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23). “South Korea Presents a New Digital Normative Order to the World.”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238&pageIndex=46&bbsSeqNo=94&nttSeqNo=3183520&searchOpt=ALL&searchTxt=>. (Retrieved on January 26, 20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대한민국이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를 전 세계에 제시합니다.”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238&pageIndex=46&bbsSeqNo=94&nttSeqNo=3183520&searchOpt=ALL&searchTxt=>. (검색일: 2024.01.26.)}
- Muñiz, M. (2019). “A New Social Contract for the Digital Age.” In *Work in the Age of Data*. Madrid: BBVA. <https://www.bbvaopenmind.com/wp-content/uploads/2020/02/BBVA-OpenMind-Manuel-Muniz-New-social-contract-for-digital-age.pdf> (Retrieved on January 26, 2024).
- Nahm, J. (2020). “Platform Workers and the Reconstruction of Social Contracts.” *Journal of Citizen & World*, 40, 1-52.
- {남재욱 (2022). 플랫폼 노동과 사회계약의 재구성. <시민과 세계>, 40호, 1-52.}
- Oh, S. (2021).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ocusing on Issues of Freedom of Expression, Discrimination, and Privacy.” *Dong-A Law Review*, 91, 239-281.
- {오시진 (2021). 인공지능과 국제인권법: 표현의 자유, 차별, 프라이버시를 중심으로. <동아법학>, 91호,

- 239-281.}
- Oh, Y. (2021). "Policy Direction for People-centric Digital Governance." *IT & Future Strategy*, 7, 1-64.
- {오연주 (2021). 사람 중심의 디지털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 방향. <IT & Future Strategy>, 제7호, 1-64.}
- O'Neil, C. (2016). *Weapons of Math Destruction: How Big Data Increases Inequality and Threatens Democracy*. New York: Crown.
- Park, M. (2018). "Necessity of Understanding Platform Functions for Online Platform Regulation." *Distribution Law Review*, 5(2), 111-141.
- {박미영 (2018).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플랫폼 작용의 이해 필요성. <유통법연구>, 5권 2호, 111-141.}
- Pettit, P. (1997). *Republicanism: A Theory of Freedom and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edeker, D., Gill, L. & Gasser, U. (2018). "Towards Digital Constitutionalism? Mapping Attempts to Craft an Internet Bill of Rights."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80(4), 302-319.
- Rhee, G. (2023). "Directions for Green-Digital Transformation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GDX Report*, 2023-02, 1-27.
- {이규엽 (2023).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그린-디지털 전환 추진방향. <GDX 보고서>, 2023-02, 1-27.}
- Sattarov, F. (2023). "Technology and the Distribution of Power." In Henrik S. Sætra(ed.), *Techn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03-214. New York: Routledge.
- Shim, W. (2023). "The Direction of AI Legislation for Human Rights: The Need for Impact Assessment in Light of the Digital Bill of Rights." *Sogang Journal of Law and Business*, 13(3), 37-66.
- {심우민 (2023). 인권보장을 위한 인공지능 입법방향: 디지털 권리장전에 비취본 영향분석의 필요성. <법과 기업 연구>, 13권 3호, 37-66.}
- Shim, W., Park, Y., Kim, Y., Kang, M. & Kim, S. (2021). *Researching the Current State of Social Conflicts and Responses to Digital Transformation: Focusing on Conflicts Related to Online Platforms*. Seoul: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심우민·박용숙·김연식·강명원·김성은 (2021).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갈등의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온라인 플랫폼 관련 갈등을 중심으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Shim, W., Won, S. & Lee, J. (2022). "An Exploratory Study on Contactless Digital Economy: the Characteristics, Regulatory Issues and Resolutions." *Informatization Policy*, 29(2), 66-90.
- {심우현·원소연·이종한 (2022). 비대면 디지털 경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특성, 규제쟁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29권 2호, 66-90.}
- So, D., Park, J. & Lee, J. (2022).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through Data Analytics: Issue Analysis and Policy Implications." *KISTI Data Insight*, 27, 1-42.
- {소대섭·박진서·이재성 (2022).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 (AI)윤리 이슈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KISTI Data Insight>, 27호, 1-42.}
- Song, T. (2021). "Recent Key UN Digital Cooperation Agendas and Policy Implications." *IFANS Focus*, 2021-08K, 1-5.
- {송태은 (2021). 최근 UN의 디지털 협력 주요 의제와 정책적 함의. <IFANS Focus>, 2021-08K, 1-5.}
- Sung, N. (2018).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Digital Age."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4(2), 1-45.
- {성낙인 (2018). 디지털 시대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개념. <미디어와 인격권>, 4권 2호, 1-45.}
- Taylor, L. (2021). "Public Actors Without Public Values:

- Legitimacy, Domination and the Regulation of the Technology Sector.” *Philosophy & Technology*, 34, 897-922.
- Yang, H. (2022). “Digital Transformation and Social Change in the Post-COVID-19 Era.” *GDX Report*, 2022-01, 1-44.
- {양희인 (202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대전환과 사회 변화 전망. <GDX 보고서>, 2022-01, 1-44.}
- Yeo, Y. (2022). “Prospects and Implications of Mid-to Long-term Changes in Korean Economic Society by Digital Transformation Scenario.” *National Future Strategy*, 42, 1-30.
- {여영준 (2022).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국가미래전략 Insight>, 42호, 1-30.}
- Yi, K. (2021). “Constitution as Political Orientation.” *The Korean Review of Political Thought*, 27(1), 88-109.
- {이경민 (2021). 헌법의 정치적인 의미. <정치사상연구>, 27집 1호, 88-109.}
- Yilma, K. M. (2022). “Bill of Rights for the 21st Century: Some Lessons from the Internet Bill of Rights Movem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24(4), 701-716.
- Yoo, J. (2020). “Global Issues and Strategic Implications of Cybersecurity Issues.” *STEPI Insight*, 262, 1-32.
- {유지영 (2020). 사이버안보 이슈의 글로벌 쟁점과 전략적 시사점. <STEPI Insight>, 262호, 1-32.}
- Yoo, J., Choo, H. & Kang, S. (2021). “An European Approach to Ethics on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Principles to Practices.” *SPRi Issue Report*, IS-114, 1-22.
- {유재홍·추형석·강송희 (2021). 유럽(EU)의 인공지능 윤리 정책 현황과 시사점: 원칙에서 실천으로. <SPRi 이슈 리포트>, IS-114, 1-22.}